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기관의 장
람	

제 27 호

2015. 3.10(화)

공	1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9

회					
람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0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 제 과 장

1. 개정이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항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세출 항목에 관리분야 추가(안 제3조)

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라. 불합리한 조문 삭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3. . ~ 2015. 3.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위하여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수금
- 2. 기채전입금
- 3. 보조금
- 4. 분양지 매각대금
- 5. 부지임대료
- 6. 일반회계 전입금
- 7. 그 밖에 수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매입비
- 2. 지장물보상비
- 3. 공업용지공사비
- 4. 부대시설비
- 5. 기채상환금

6.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시

- 제4조의 제목 "(예산의 이월)"을 "(세출예산의 이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제1항 에서 정하는 경비
 - 3.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삭제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 제1조(목적) ------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 양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 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 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공 업용지공사비, 부대시설비, 기 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조성 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정

개

아

--- 위하여 남원시 농공지구 조 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세입) 남원시 농공지구 조 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수금
- 2. 기채전입금
- 3. 보조금
- 4. 분양지 매각대금
- 5. 부지임대료
- 6. 일반회계 전입금
- 7. 그 밖에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매입비
- 2. 지장물보상비
 - 3. 공업용지공사비
 - 4. 부대시설비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제4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당해년도 사업비로 사업을 완공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사용할 수 있다.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

<신 설>

- 5. 기채상환금
- 6.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 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 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 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 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 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비

<신 설>

<u><신</u> 설>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제5조 <삭 제> 사업조성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에------정한다.

- 3.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지 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제2 항에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 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 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 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 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보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제7조(시행규칙) ----- 시행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 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1】

	입받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남원시 농	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의 견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님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산 림 과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용료 감경에 관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험·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3. 10. ~ 2015. 3. 30.(20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워시 조례 제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개장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일날"을 "당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휴장하고 자 하는"을 "휴장할"로, "전에 휴장 내용을"을 "전에"로, "등에 사전"을 "등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않을"을 "아니할"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운영시간은 연중"을 "운영시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이를"을 "때에는"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시 이를"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인 자"를 "이하"로,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제6조제4항제6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제6조제4항제8호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남원시민 임을 확인 할"을 "시민임을 확인할"로, "남원시민"을 "시민"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제1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해서는"을 "사람에게"로 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빈이나"를 "국빈,"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위를 해"를 "행위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관리자는"을 "시장은"으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전액 환불"을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액 환불"을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0 퍼센트 환불"을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퍼센트 환불"을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미반환"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불"을 각각 "반환"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긴급히 개·보수"를 "긴급 개선·보수"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자는"을 "시장은"으로, "경우 사유"를 "사유"로,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을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로 한다.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의를 도모하기"를 "편의를"로 한다.
-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제1항 단서 중 "다만, 시장은"을 "다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을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를 "선정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 제16조의 제목 "(위탁 사용료 결정 등)"을 "(위탁 사용료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위탁 사용료의 감경)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원지역 농·특산품 및 공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17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제1항"을 "수탁자가 제1항"으로, "훼손한"을 "훼손할"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있으며, 이 경우"를 "있으며,"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 중 "수탁자의"를 "수탁자가"로, "미비하다"를 "없다"로 한다. 제20조 중 "맞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항은「행정절차법」,「남 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 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7호

입 장 료(제6조 관련)

			입장료	분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고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체험・휴양시설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 하 군인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제7조 관련)

시

구 분	カス) ો ડો	사용료(원)		비고		
	기준 인실 -		기단 1년		주중	주말	H <u>1</u> 2
	1일	3명 이하	100,000	150,000			
트리하우스	1일	4명 ~6명	120,000	170,000			

구 분	사	용 료(원)	비고
) ————————————————————————————————————	4시간	8시간	1일	H 1½
2층 교육장	100,000	140,000	210,000	·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12cm

[별지 제1호서식]

 $2 \, \text{cm}$

입 장 권(제6조 관련)

20cm

시

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____ NO.____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취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선 ·어 른(개인2,000/단체1,500) 편 ·청소년("1,500/ " 1,000) ·청소년("1,500/ " 1,000) 철 6cm ·어린이(" 1,000/ " 500) ·어린이("1,000/ " 500) 부 년 월 일 분 년 월 일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mark>에만</mark> 유효합니다.

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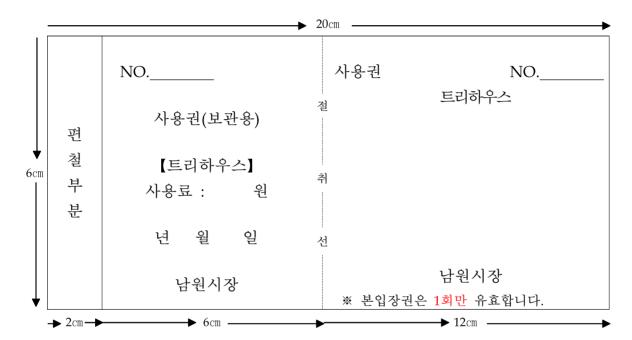
- 16 -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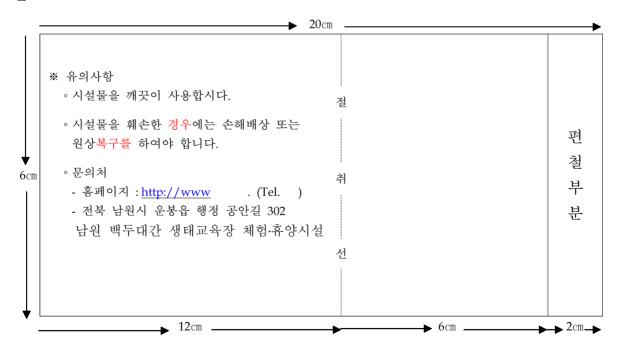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1. 시설사용권(트리하우스)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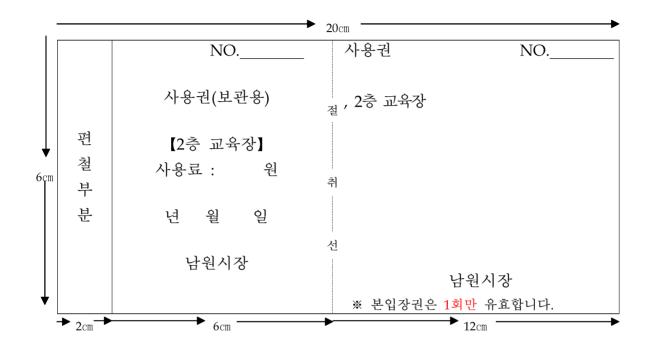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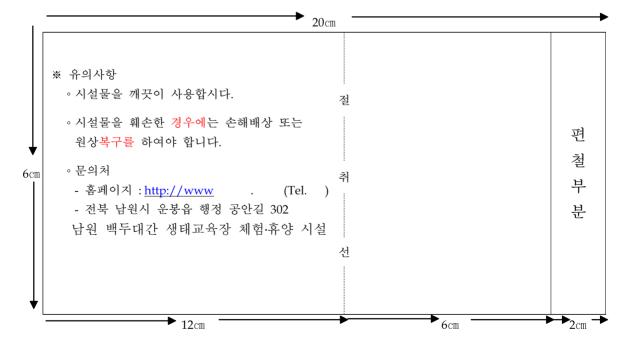
2. 시설사용권(2층 교육장)

<전 면>



보

<후 면>



[별지 제3호서식]

위·수탁 승인 신청서(제15조 관련)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시 설 명				
사용일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탁조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시

_ , _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휴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양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	
을 제외하고는 매일 <u>개장함을</u>	
원칙으로 한다.	<u>개장한다</u> .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1
경우 제외) 및 설·추석 <u>당일</u>	
날	<u>당일</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②
체험ㆍ휴양시설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u>휴장하고자 하는</u> 경우에	<u>휴장할</u>
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체험ㆍ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	<u>전에</u>
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u>등에 사전</u>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u>사유로</u>	<u>등에</u>
<u>인하여</u>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	사유
하지 <u>않을</u> 수 있다.	<u>로</u>
	아니할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휴양시설의 <u>운영시간은 연중</u>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u>은</u>
하되, 트리하우스 및 2층 교육	
장은 24시간 우영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

제6조(입장료 등) ① (생 략)

- ②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u>시</u> 이 를 징수한다.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에 대하여는</u> 입장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만 6세 <u>이하인 자</u> 및 만 65세 <u>이상인 자</u>
- 4. (생략)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 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②
때에는
세6조(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
<u></u> 수
②
<u>\lambda\]</u>
③ (현행과 같음)
4
사람은-
1. • 2. (현행과 같음)
3 ○] ʊॊ}
 이상인 사람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u>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u>
<u>E] 110 11 11 011 E</u>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

 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시

-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 9. (생략)
- 10. <u>남원시민 임을 확인 할</u>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 를 제시하여 <u>남원시민</u>으로 인 정되는 사람

<신 설>

제7조(시설 사용료 등) ① 체험· 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 스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 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u>사</u> 람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 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휴양 시설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 예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
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u>「5.18</u> 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u>된</u>
9. (현행과 같음)
10. 시민임을 확인할
<u>시민</u>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설 사용료 등) ①
사람에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 사용료 면제 등)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에 대하여는</u>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u>국빈이나</u>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 3. (생략)
- 제10조(행위제한) ① 체험·휴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u>행위를 해</u>서는 아니 된 다.
 - 1. ~ 6. (생략)
 - ② <u>관리자는</u>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u>사람에 대하여</u>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생 략)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u>사유로 인하여</u> 사용이

제8조(시설 사용료 면제 등)
<u>사람</u>
<u> </u>

1. <u>국빈,</u>
2.・3.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위제한) ①
<u>행위를 하여</u>
<u>.</u>
1. ~ 6. (현행과 같음)
② <u>시장은</u>
<u>사람에게</u>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1
1 사유로
」

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u>전액 환</u> 불

- 2.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 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 3.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 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 4.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 5.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 ③ <u>환불</u>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u>환불</u>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 U	, ,

<u>전액</u>
2
전액
3
80퍼센트
4
·. 50퍼센트
5
J.
경우 : 미반
<u>0 1 1 1 1 1 1 1 1 1 </u>
<u> </u>
<u>경우에는 전액</u>
<u>반환</u>
③ 반환
- <u>반환</u>
세12조(사용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 2. 시설물을 긴급히 개·보수 하는 경우
-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 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공고하여야하며 재난 등 긴 급한 상황 발생시 그리하지 않 을 수 있다.
- 제13조(편의시설 설치 · 운영) 시 저 장은 체험·휴양시설 이용객들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 험 · 휴양시설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배상(변상)에 관한 세부사항 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 례 및 「남원시 물품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2 <u>긴급 개선·보</u>
순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u><삭 제></u>
② 시장은
- 사유
발생 시
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에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생 략)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현행과 같음)

----- 편의를----

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_ 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운영 및 위탁) ① 체험· 후 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u>다만, 시장은</u>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 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 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 3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제15조(운영 및 위탁) ①
<u>다만,</u>
② 위탁기간
③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
<u>는</u>
붙여
 ④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① <u>1 기계로 보기를 가입니</u>
<u>선정할 경우에는</u>

하다.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 탁 사용료는 <u>「남원시 공유재산</u>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 설>

시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u>제1항</u>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 거나 <u>훼손한</u>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 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 <u>공무원으로 하</u> 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남원시 공유재
<u>산 관리 조례」</u>
제16조의2(위탁 사용료의 감경)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는 남원지역 농·특
산품 및 공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
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
과 같음)
②
변경할 때에는
③ 수탁자가 제1항
훼손할
제18조(관리감독) <u>① 시장은 제17</u>
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
_
<u>다.</u>
② <u>공무원에게</u>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 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 류를 검사하게 할 수 <u>있으며, 이</u> 경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 에 성실히 <u>응하여야</u>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 할 내용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 무·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3. <u>수탁자의</u> 운영 능력이 <u>미비</u> <u>하다</u>고 판단되는 경우

4. (생략)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맞는 서류 등을 비치하여 관리

<u>있으며,</u>
<u>따라야</u>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
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u> 여야 한다.</u>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u>할</u>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
무 등을 위반한 경우
<u>2.</u>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명
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없다
<u> </u>
4. (현행과 같음)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u>따른</u>

보

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2조(준용규정)	
-		<u>사항은</u>
_	「행정절차법」,「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남원	<u> </u> 일시 물
-	품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2	조례 <u>」</u> -
제:	23조(시행규칙)	<u>시행</u>
	<u>에</u>	

러 긴 제 팔 ^	의	견	제	출	入
-----------	---	---	---	---	---

1. 의견제출 목록

성명(명칭) 2. 제출자 _____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남원시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